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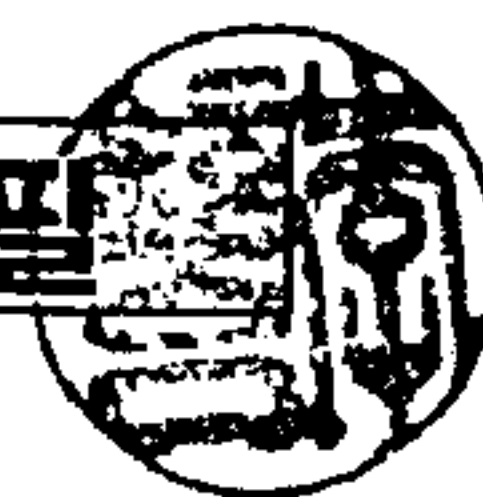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88 호
의 결 년 월 일	1999. 5 . 19 . (제 83 회)

의결사항
의안가결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 출 년 월 일	1999. 5 . 11 .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8
----------	----

제출년월일 : 1999. 5. 11.

제 출 자 : 보 은 군 수

1. 제 안 이 유

- . IMF관리 체제하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기업과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및 농공단지내휴·폐업중인 업체를 인수하여 입주하는 자에 대한 일부 감면조례의 내용을 정리 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7년간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경감 
- .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은 재산세 누진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000분의3을 적용
- .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취득한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3년간 100분의50을 경감함

3. 근 거 법 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 제2호 동조제5항제2호, 3호 및 지방세법 제9조, 동조제276조

- 첨 부 1.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기타 참고 자료 (근거법령)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 제목중 “승용자동차에”를 “자동차에”로 한다.

제24조의3 및 제24조4 및 제24조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보은군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로부터 7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24조의4(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

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24조의5(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한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부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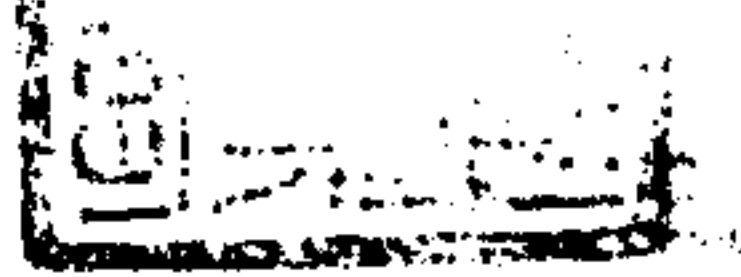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②(생략) <신 설 >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②(현행과 같음) 제24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 을 위한 감면) 보은군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 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 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은 전액 을 면제하고, 그 다음3년간은 50%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 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날

현행	개정 (안)
<신 설 >	제24조의4(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신 설 >	 제24조의5(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 하는자에 한함)가 취득한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부 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청정북도 10047

충 청 북 도

우6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39 / 전화(0431)220-2312 형2312 / Fax 2319
재정과 과장 박영화 / 세정담당사무원 무일제 / 담당자 이장근

문서번호 재정 13400 - 456

시행일자 '98. 12. 9 (준영구)

(경 유)

발 을 더 01 - 12

참 조 세무(세정·재무·
재정경제)과장

전 결	과 장	지 시
일 자	12. 9	
시 각		
결 수	번호	425
처 리 과	재 무 과	
담 당 자	최 상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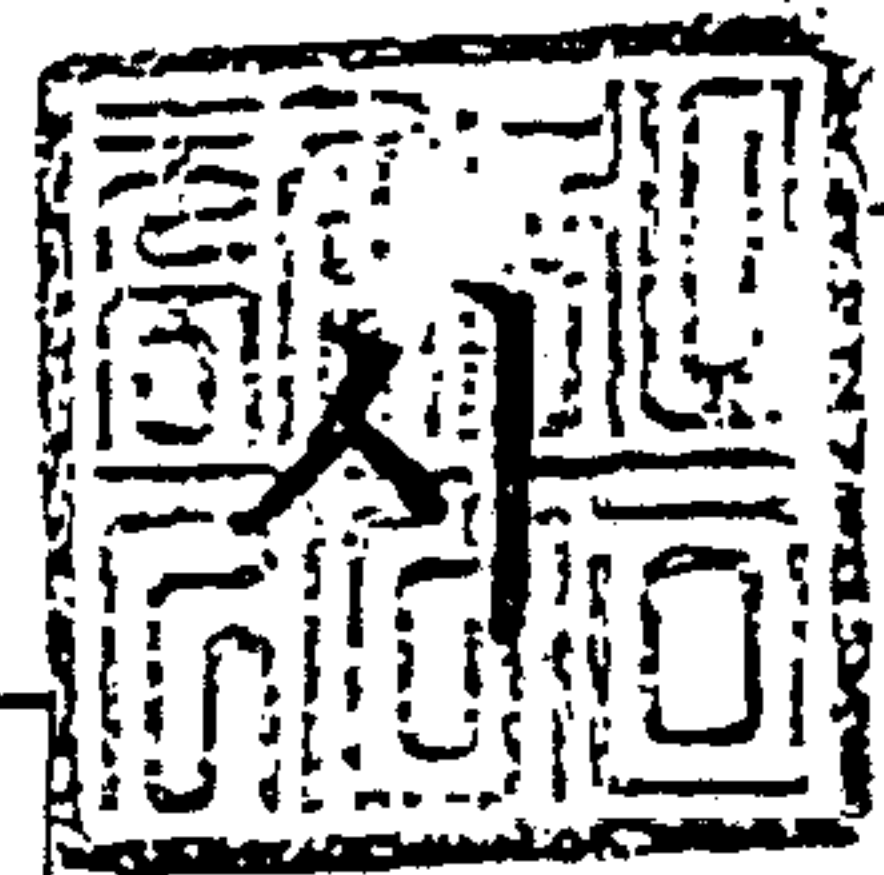
제 목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달

1. 행정자치부 세제 13400-282('98. 11. 19)호와 관련입니다.
2.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IMF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고, 일부 감면조례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따로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면기간은 15년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이 가능함)

붙 일 1.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사본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전결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11

15

1000

일차
시각

수	월	일	150
---	---	---	-----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五 六 七 八 九 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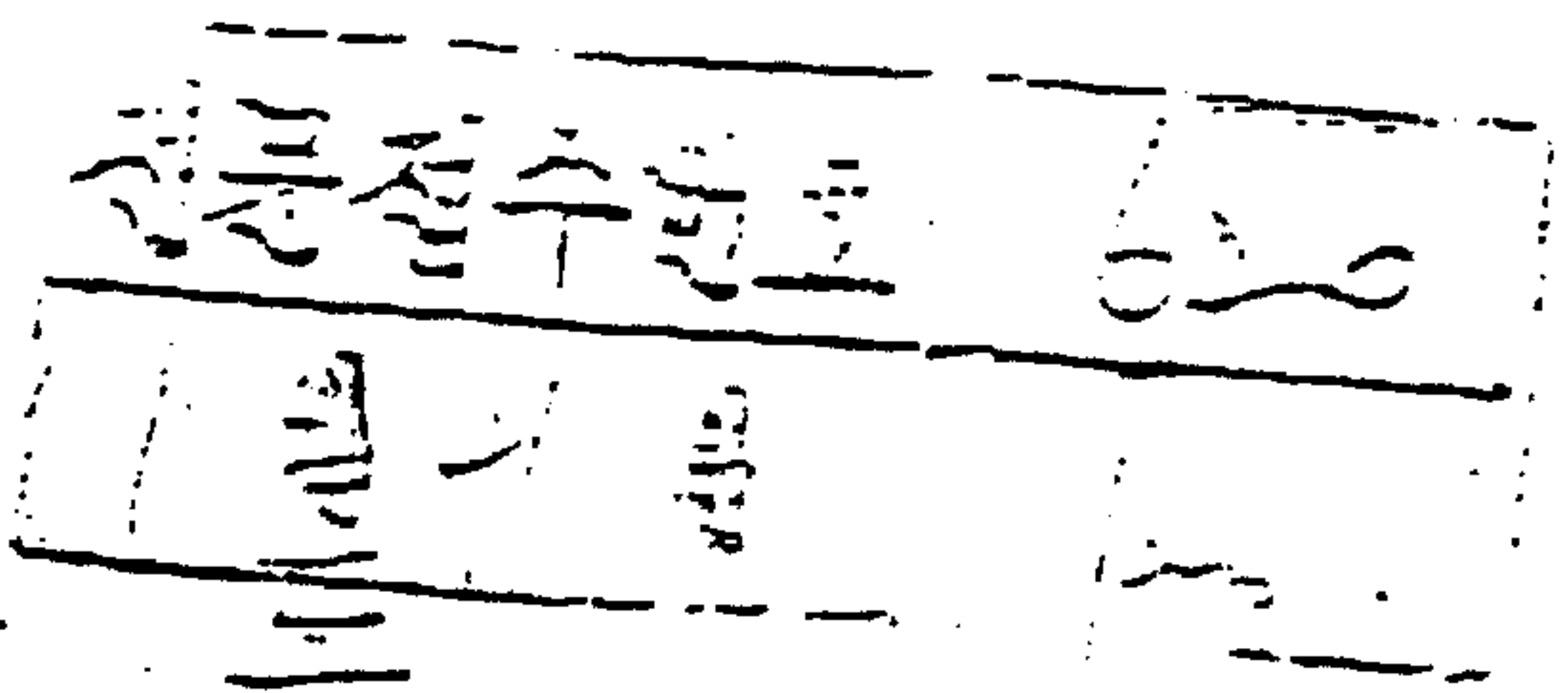
1000

11/11/11

- 

전결 자치행정국장 조규환

충 청 북 도 지



우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흥화동33 / 전화043)221-2212 형2312 Fax 2313
재정과 과장 박영호 / 세정분과사무관 우일재 / 과장자 이장근

문서번호	제정 13400 - /32	첨	부	장	지
시행일자	'99. 1. 27 (준영구)	첨	자	시	관
(경 유)		첨	수	본	호
관	을	덕	01 - 12	첨	재
관	조	세	무(세정 · 재무 · 재정경제)과장	첨	부

제 목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시달

1. 행정자치부 제제 13400-22('99. 1. 13)호와 관련입니다.
2. 농공단지내 휴 · 폐업중인 업체를 인수하여 일주하는 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로불일과 같이 시달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 바랍니다.

- 붙 일
1.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사본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전결 자치행정국장 조규린